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4. 2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  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기획전략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기획전략과장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□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을 통합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(약칭: 지방분권균형발전법)」이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
-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.
- 이에 따라, 우리구에서도 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위임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·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.

## □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, 안 제2조는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,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회의소집 및 통지, 조사·연구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

-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 법령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기능이 유사한 현행의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.

####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4년 2월 26일 조례 · 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####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####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####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00924021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4. 2. 28.

제출자: 달서구청장  
(기획전략과장)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의 통합으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(약칭: 지방분권균형발전법)」이 제정(2023. 7. 10. 시행)됨에 따라,
- 나.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·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2조)
-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
  - 당연직 위원 구성,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
- 다.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-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라. 위원회의 회의 소집·통지, 간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마. 조사·연구, 운영세칙 등(안 제5조 ~ 제6조)
- 바.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 폐지(부칙 제2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(2024. 2. 1. ~ 2. 21.) 결과: 의견 없음
 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 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  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 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 - 6) 조례 · 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구성)**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당연직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자치행정 담당 국장으로 한다.

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

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
제5조(조사·연구)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 세칙)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행하여진 자치분권협의회의 심의·의결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## 【관 계 법령】

### □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[시행 2023. 7. 10.]

#### [법률 제19514호, 2023. 7. 4., 타법개정]

제67조(시 · 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 · 운영) ① 시 ·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· 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시 · 도지사는 관할 시 · 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· 도지사 소속으로 시 · 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.
- ③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 · 조정 등을 위하여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· 도 지방시대위원회, 시 · 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[시행 2024. 1. 16.]

#### [대통령령 제34140호, 2024. 1. 16., 일부개정]

제67조(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(이하 "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
  1.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
  2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3. 해당 시 · 군 · 구 지방의회 의원
  4. 해당 시 · 군 · 구 공무원
  5.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
-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· 군 ·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⑤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